Ⅳ 결어

법철학자 론 풀러(Lon L. Fuller)는, 우리가 다루는 주제의 성질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명확성을 기할 수는 없고, 그럴듯해 보이는 명확성이 솔직하고 개방된 모호함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108] 장래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로 된 합의는 그것이 법령이든, 약관이든, 계약이든, 일정 부분 불명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불명확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규범은 정태적이나 그 규범이 규율하고자 하는 현실은 동태적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대한 논의도 약관의 뜻이 언제나 명확할 수는 없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불명확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불명확성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약관에는 언제나 불명확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불명확성으로 인한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i) 보험자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ii)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iii)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iv)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여 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약관보다 보험약관 관련 분쟁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i)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통해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를 하는 이상,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보험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ii) 금소법과 같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

108) 론 풀러(2015), pp. 101~102

접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 환경도 변화하였다. (iii) 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명확성 제고 및 정보 공개 촉진 기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거나, 명확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iv)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장대상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 않게 보장범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별 분쟁 사안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그 불명확성이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인 경우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이 보험제도의 선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판례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보충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거 재해사망보험금 사건 당시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고, 바람직한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성, 보충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하급심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신의성실, 공정,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과 같이 판단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체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기능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새기는 것은 보험의 선의성 및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